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시행 안내

공포일자 2005. 8. 31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의 개정(2005. 5. 26. 공포, 법률 제7508호)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9024호)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제2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의 개정전문은 협회홈페이지(<http://www.keeaa.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산업자원부전력산업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508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권한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업무를 종전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하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도록 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검사 대상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제2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